

새만금사업 12월 '첫 삽'

환경·생태용지 조성 1단계 실시계획 승인

2040년까지 9.76km에 1조1511억원 투입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지난 31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 사업(사업시행자 새만금지방환경청) 1단계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12월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40년까지 새만금 지역 49.76km에 1조 1511억 원을 투입해 생태습지, 야생동물 서식지, 대자연 체험지역 등을 3단계로 나누어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승인된 1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복합도시용지 남측 0.81km에 577억 원을 투입해 ▲주상천(전북 부안군 하서면 일원)의 수질 개선을 위한 자연형 수질 정화 습지와 서식처 복원을 위한 생태초화원 조성 ▲방문객의 생태체험·교육을 위한 조류·습지 관찰대 및 생태놀이터 등을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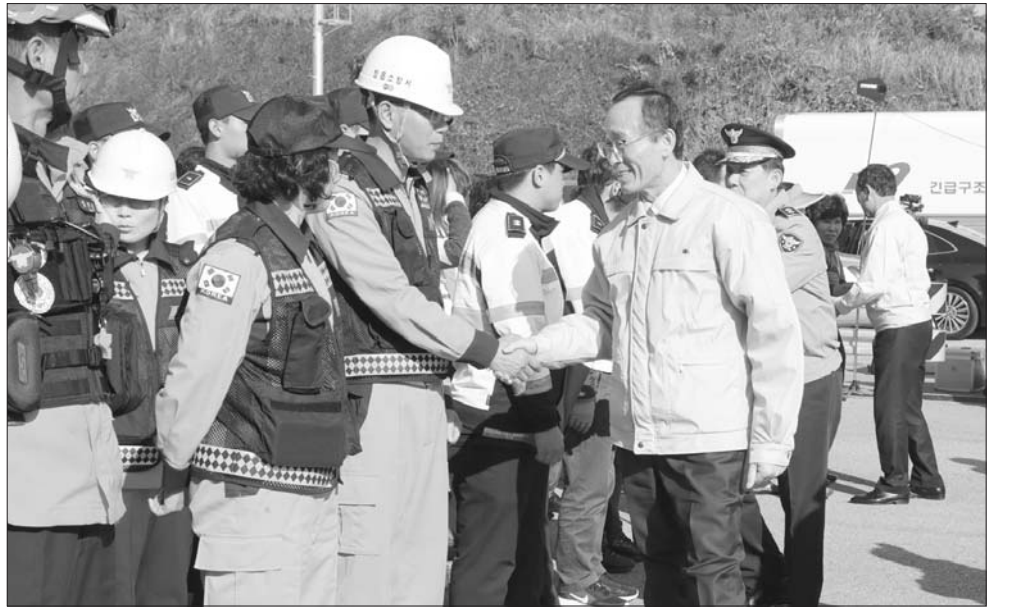
1단계 사업 추진으로 주상천의 수

질 개선(Ⅲ→Ⅱ등급) 효과, 다양한 생물 확보 등과 함께 연 30만 명(일 최대 2천 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사업 승인이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은 물론 새만금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장은 "환경·생태용지뿐만 아니라 관광·레저용지 등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현장속으로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31일 정읍 태인면 항가터널에서 차량추돌에 의한 화재발생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처 현장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및 참석자들이 훈련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 못받는 일 줄어든다

노인·중증 장애인가구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력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도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중증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포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을 못 받는 계층) 1,0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해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부양의무 완화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장애 등이 있는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본인 의사를 확인해 직권 신청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해 불편을 덜어 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의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게 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북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분할되거나 합병, 또는 지목변경, 신규등록 된 4만2,109필지 중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를 제외한 2만7,3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전북도는 위 수시분 2만7,364필지 전체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자가산전,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했다. 올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필지수는 2만7,364필지로 분할된 토지 1만6,045필지, 합병된 토지 2,482 필지, 지목변경된 토지 5,260필지, 신규등록된 토지 570필지, 기타(등록전환 등) 2,998필지를 결정·공시하게 됐다.

이번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29일까지 토지소재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

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도 활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국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및 변상금부과 등에 사용된다.

한편, 전북도는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이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에 222필지가 접수되어, 이중 126필지를 기각하였고, 66필지는 상향 조정을, 30필지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오늘 오후2시 지진대피훈련

30분간 실제 발생상황 가정

전북도는 지진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도, 14개 시·군, 대내소재 중앙행정기관, 학교, 어린이집 및 58개 직장민방위대 등이 도내 전기관이 참여하는 지진대피 훈련을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30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피훈련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행되는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광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우리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실제 지진발생 상황을 가정해 30분간 실시된다.

전북도에서는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만여부의 지진행동 요령 리플릿을 제작하여 시·군에 배포하였고, 실내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숙달 하는 등 사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한중 사드갈등 출구 찾을까

양국, 관계개선 관련

협의 결과문 발표

한중 양국이 지난 31일 관계개선 관련 협의 결과문을 동시에 공개했다.

다음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두 번째 한중정상회담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2년 가까이 이어졌던 한·중 두 나라 간 갈등이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

들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은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중 양국이 수차례 물밑 교섭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공조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동시에 사드 배치로 인한 보복 조치 문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문제 등 양자 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전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일기 내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전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바꾸는 과정에서 상실한 대중(對中)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합의를 하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당초 중국은 정부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사드에 대한 불만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이제 한중 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취업절벽에 공공기관 인턴이라도...”

도, 82명 모집에 193명 몰려

20일간 실무부서 배치 업무

전북도는 도내 미취업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근무경험을 갖도록 지원하는 직무인턴 대상자 82명을 선발,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2017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 인턴'은 전공 관련 공공기관에서 현장 실무 체험 지원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를 모집, 마감한 결과 82명 모집에 193명(남 68명, 여 125명) 신청했다.

도내 8개 대학(고) 학생 중 재학생(74명), 휴학생(28명), 졸업생(91명)으로, 재학생은 4학년 위주로 학점이수 완료 및 수업조정이 가능한 학생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직무 인턴은 전공분야의 공공기관 실무부서에 배치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20일간) 인턴 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진로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산재보험을 보장받는다.

도는 인턴 자격요건 심사 및 인턴 선발과 직무인턴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 공공기관 및 대학 관계자, 외부관계자로 인턴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하였고, 도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턴의 근무요령과 멘토의 역할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와 인턴십 운영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사전교육(OT)을 11월 17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고창군 공고 제2017-1280호

고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2조에 따른 고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창 군관리계획(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	변경후	최종 결정일	비고
가정	5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창읍 월곡리, 교촌리 일원	149,625	-	149,625	연방고시 제11호 (10.2.12)	

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주요 변경사항"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보건진료소(가정) → 어린이집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6-③	가정	지정 용도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준 비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노인자시설 준 가목 및 부대 시설
		건축률	· 42% 이하 · 100% 이하 높이(층수) · 4층 이하

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주요 변경 사항 외) - 계획선택공립장소 비처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일부 변경

2. 고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도면 - 계획선택공립장소 비처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주민복지실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4. 의견 제출: 공람기간 만료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

5. 기타 사항: 본 공고는 고창군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및 고창군 게시판에도 게시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주민복지실 (☎063-560-22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일 고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